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련 규칙 제정안

외 교 부
기 획 조 정 실
혁신행정담당관실

1. 제정이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두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2023. 6. 5.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법령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재외동포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미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다. 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청장과 재외공관장 간의 청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청장은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외동포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수호와 직결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가 장관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를 우선하도록 함.

사. 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의 특례(안 제7조)

청장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등에 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함.

아. 정책협의회(안 제8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외교부령 제 호

외교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개정을 필요로 하는 재외동포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그 실적
2. 중요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중요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기타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사항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청장과 재외공관장 간의 청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① 청장은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소관 사무에 대해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중대한 국가이익의 실현·수호와 직결되거나 청 운영의 장기적 또는 근본적 방향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정책 사항
2. 업무의 근간이 되거나 비중이 큰 사항으로서 복수의 외교부 실·국 및 재외공관 또는 타 부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항
3. 외교 관련 사안으로 양자·다자 등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가 장관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를 우선한다.

④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관장에게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내용에 관하여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7조(청장의 공관장에 대한 지시의 특례)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그 사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3. 부처 간의 명확한 소관 업무 구분 또는 처리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으로, 외교부 소관 실·국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안
4.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안으로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8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부서명 >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00 - 7130